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98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98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5585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연

변론 종결 2022. 12. 23.

판결 선고 2023. 1. 2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합55850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05,451,28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51,2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해당 부분의 "피고 A"을 모두 "A"로 고치고, 인정근거 부분(7쪽 1 내지 3행)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해당 부분의 "피고 A"을 모두 "A"로 고치고, 제1심 판결 9쪽 3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은"을 삭제한다. 그리고 10쪽 6행 다음에 "또한 피고 C은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를 추가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피고 A"을 모두 "A"로 고친다. 그리고 7쪽 15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들은 연 8%의 지연손해율 적용은 근거가 없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연손해율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연 25%를 초과하지 않고, 달리 지나치게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를 추가한다.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사건 구상금 채권)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당진시장, 안성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인데, 위 각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9. 6. 17. 무렵 이미 성립하였다.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였다.

②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전기요금,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 채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③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1. 3. 17.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은,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시가는 1,115,448,000원인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850,920,000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¹⁾ 또한,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염가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A의 사업을 지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사업 계속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 고무 재생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A로서는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가 필수적인바, 그 매각이 사업지속을 위한 방안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들의 악의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선의를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사실인정의 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은 20년 이상 폐플라스틱 가공업에 종사해왔는데, 오랜 기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거래를 해온 I의 주선에 의해 A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매도인의 부채(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제3항)', '기업은행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는 계약 이후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한다(제4항)'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이 위와 같이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A이 계약 체결일인 2020. 9. 3.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면서도 잔금은 2020. 10. 3.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9. 10.이고, 피고 B이 A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은 2020. 10. 23.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시기도 당초 약정과 다르다.

④ H은 자신의 아들인 J을 대표자로 하여 2020. 12.경 피고 C을 새로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20. 12.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하였고, 피고 C은 2020.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의 경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매각의 조건이나 자금의 흐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달리 전득자인 피고 C이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가액배상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마.항과 바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마.항의 "피고 A"을 모두 "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4 내지 5행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아래에서 6행의 "305,451,282원(= 287,629,227원 + 17,822,055원)이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피보전채권에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경근

판사이호재

판사민지현

별지

12.자 준비서면 3쪽),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A의 미납 전기요금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주장한 내역은 피고 B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이 스스로 기재한 내역(갑 제8호증의 1의 기재)과도 달라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